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 학교 수업시간 등에 실시되는
집회·시위에서 확성기등 사용 금지 등〉
■ 이성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288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성권의원 등 13인
2. 제안연월일 : 2025. 7. 4.
3. 회부연월일 : 2025. 7.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회 또는 시위가 학교 주변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아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한 기준 이하의 소음으로도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교육환경의 평온을 위하여 학교 주변에서는 수업시간 등 일정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에서는 학교의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교육환경을 보

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금지 통고 사유로 교육환경의 평온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¹⁾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주변 지역에서 학교의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2호, 제14조제2항·제3항, 제24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 ④ (생략)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 ----- ----- ----- ----- -----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현행	개정안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u>학습권</u>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생략)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팽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	1. (현행과 같음) 2. ----- ----- ----- <u>학습권 및 교육환경의 평온</u>----- -----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5. (생략)	② <u>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에서는 학교의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 ----- ----- -----<u>경우나</u> <u>제2항에 따른 확성기 사용금지 시간에 확성기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u>----- -----. 제24조(벌칙)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4조제3항</u>----- ----- ----- 5. (현행과 같음)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는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현행법 제8조제5항제1호·제2호·제3호에 따라 집회·시위 금지 통고를 한 사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754건(2019년 0건, 2020년 1건, 2021년 7건, 2022년 11건, 2023년 5건, 2024년 730건)이 있었고, 제8조제5항제1호·제2호·제3호에 따라 집회·시위 제한 통고를 한 사례는 다수 있지만 통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은 학교에 대한 시간대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를 설정하고 있음.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

[단위: dB(A)]

소음도 구분		대상 지역	시간대		
			주간 (07:00~해지기 전)	야간 (해진 후~24:00)	심야 (00:00~07:00)
대상 소음도	등가소음도 (Leq)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60 이하	50 이하	45 이하
		공공도서관	60 이하	55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0 이하	
	최고소음도 (Lmax)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80 이하	70 이하	65 이하
		공공도서관	80 이하	75 이하	
		그 밖의 지역	90 이하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인근에서 확성기, 북, 징, 팽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확성기등”이라 함)를 사용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측정했을 때 등가소음도 60dB(A), 최고소음도 80dB 수준인 경우에는 현행법상의 기준을 준수한 것임.

참고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0dB(A)는 일반적인 대화소리 수준이고, 80dB(A)는 도시교통 소리 수준²⁾의 소음으로서 해당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보임.

개정안을 통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업시간에

2) <https://www.noiseinfo.or.kr/inform/noise.do>

학교 인근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에서 확성기 등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확성기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업시간인 평일 일과시간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를 가급적 줄이려고 한 것으로 보임.

다만, 헌법에서 보장되는 집회·시위의 자유에는 확성기등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으며, 집회·시위에서 확성기등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더 큰 소리로 주장하고 싶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싶다는 것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소음제한기준을 넘어서 개정안과 같이 수업시간 등에 학교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할 때 확성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임.

그리고, 개정안은 모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24년 8월 기준 초·중·고등학교가 11,835개, 특수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351개³⁾로서 집회·시위에서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의 범위가 넓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경찰청은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의 평온을

3) 교육부 2024년 8월 29일 보도자료 붙임, “2024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1페이지

위해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확성기 사용이 금지되는 ‘학교의 주변지역’ 범위를 가늠하기 어려워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집회에 대한 제한을 사안별로 달리 할 수 있는 현행 법에 비해 개정안은 예외 없이 모든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므로 과잉 금지원칙 위배에 따른 위험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